

개발구역 지정(변경) 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90일	
사업 시행자	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			법인등록번호		
	주소			전화번호		
개발구역	구역명					
	지정목적					
	위치					
	시행방식					
	시행기간	. . . ~ . . .			면적	m ²
	수용계획	계획인구			세대수	
주요 유치업종				공장수		

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구역 조사서 2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서류 3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4.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5. 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 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(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 7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 따라 결정·고시된 것으로 보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8.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지적도 및 임야도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합니다)	

유의 사항

변경신청서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.

